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7호의3서식] <개정 2020. 4. 3.>

인증번호 제 호

# [ ]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
# [ ] 저공해엔진 인증서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상 호(사업장 명칭) | | | |
| 성 명(대 표 자) | | 생년월일 | |
| 주 소 | ( 전 화 번 호 : ) | | |
| 장치 또는 엔진의 명칭 | | | |
| 장치 또는 엔진의 종류 | | | |
| 장치 또는 엔진의 형식 | | | |
| 인증사항 | 사용연료의 종류 | | |
| | 장착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범위 | | |
| | 그 밖의 사용조건 | | |
| | 특기사항 | | |
| | 인증조건 | | |
| | 1. 인증사항에 명시된 장착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사용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.<br>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| | |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에 따라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120g/㎡)]